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2026년 퇴직급여제도 통합운영 계획

경상남도교육청 노사협력과

Ⅰ 근 거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제도 통합운영 추진 계획 알림” 노사협력과-7985(2024. 11. 29.)

Ⅱ 목 적

- ❑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의 본청 통합운영을 통하여 각급 학교(기관)의 교직원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인건비의 효율적인 운용 및 업무 전문성 제고
- ❑ 퇴직급여 적립금 단일화로 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이자 수익을 활용함으로써 늘어나는 재정적 부담에 대응, 교육공무직원의 안정된 노후 도모

Ⅲ 추진경과

- (2022) 「경상남도교육감-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65조
- (2023. 10.~2024. 11.)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제도 개선 TF
- (2024. 11.)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제도 통합운영 추진 계획 수립
- (2024. 11.~2024. 12.) 퇴직연금(DB, DC) 전환기회 부여
- (2025. 3.) 통합 퇴직연금규약 신고 · 수리
- (2025. 5.~6.) 퇴직연금 이관 · 통합을 위한 온라인 연수
- (2025. 6.) 2025년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제도 통합운영 계획 수립
- (2025. 6.) 퇴직연금 · 적립금 이관 완료
- (2025. 8.)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직종담당자 회의
- (2025. 9.~10.) 퇴직연금 이관 · 통합 대상자 정정(오이관 · 미이관 사항)
- (2025. 11.) 신규채용자 퇴직연금 가입(DB 가입을 기본, DC선택 가능)

Ⅳ 대 상

❑ 운영대상: 공립학교(기관) 무기계약 교육공무직원

- 정원관리 대상 38개 직종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교무행정원, 과학실험원, 전산실무원, 전담사서, 도서관운영보조인력, 사무행정원, 학부모지원 전문가, 구.학부모회직원,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특수통학차량운전원, 특수통학차량 보호탑승자, 특수교육실무원, 특수학교(급)종일반강사, 특수행정실무원, 치료사, 취업지원관, 스페셜코디네이터,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교육지도사, 기숙사생활지도원, 공기질측정기사, 방송전문가, 수련지도사, 수상안전요원, 안내원, 방과후학교실무원, 당직전담사, 청소원, 통학차량보호탑승자, 시설관리직, 매점관리원

❑ 제외대상: 기간제 근로자, 교원대체직종,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등 공립기관의 무기계약 교육공무직이 아닌 근로자

※ 제외되는 근로자는 기존과 같이 소속 학교(기관)에서 퇴직금 관리・운영

Ⅴ 예산부담(적립) 주체

❑ 교육청 부담 직종: 통합운영 대상 38개 직종 중 학교 부담 직종(아래) 외 직종

❑ 학교 부담 직종

- ① 당직전담사, ② 청소원, ③ 기숙사생활지도원(기숙형중학교 6개교*)

※ 기숙형중학교(6교): 소가야중, 거창덕유중, 미리벌중, 남해 꽃내중, 하동 한다사중, 산청중

※ 38개 정원관리직종 중 위 ①, ②, ③ 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은 도교육청에서 적립

[예산부담 주체] 교육공무직 정원관리 38개 직종에 대해 **퇴직연금을 통합운영**하되, 학교회계 예산・수익자부담경비・사업비 등으로 **별도 인건비가 편성되는 직종은 해당 학교에서 부담**

- 학교 부담 직종의 매년 발생하는 적립금과 퇴직 시 추가불입금

※ DB/퇴직(적립)금: 퇴직금 관리대장상 총 누적적립금과 퇴직 시 지급되는 실제 퇴직금 차액(부족분), DC: 직전 적립 이후 발생한 퇴직급여 소요분)**을 해당 학교(기관)에서**

→ **퇴직연금**(DB, DC)**인 경우 연금사업자**(농협은행)**로 적립**(송금)

→ **퇴직(세외적립)금인 경우 도교육청으로 적립**(송금)

[송금계좌와 일정 등은 해당시점에 안내예정, 교육청 부담직종의 경우 교육청에서 추가불입]

Ⅵ 퇴직급여 적립

❑ 적립시기

- 기관 근무 교육공무직원: **매년 12월말 적립**(1~12월분)
- 학교 근무 교육공무직원: **매년 2월말 적립**(3월~다음연도 2월분)

❑ 적립 절차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	학교(기관)	⇨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	도교육청 *학교(기관)	⇨	연금사업자 **도교육청
적립금 소요 조사		퇴직급여 산정 · 제출		최종확인		적립금 송금		적립완료

*학교(기관)가 예산을 부담하는 직종은 적립 시 도교육청이 지정하는 계좌로 해당학교(기관)에서 송금 필요

**퇴직연금(DB·DC)이 아닌 퇴직연금 도입 전의 퇴직(세외적립)금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도교육청에서 운영·관리

※ 적립자료 조사 및 송금방법에 대해 해당시점에 공문으로 안내 예정

Ⅶ 퇴직연금 신규가입

❑ **대상**: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제도 통합운영 대상 직종(정원관리 38개 직종) 중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무기계약 근로자

❑ **시기 및 방법**: **매년 1회**(별도 계획수립 · 안내)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교육공무직이 아닌 교원대체직종 등, 이미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DB, DC), 퇴직(세외적립)금)에 가입된 경우, 기간제 근로자

❑ **가입유형**: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2025. 7. 1. 이후 신규 채용자는 통합 이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가입을 기본으로 하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희망할 경우 DC가입도 허용

※ 최초 선택 이후 연금제도의 전환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DB·DC만 선택가능

Ⅷ 퇴직관련 서류 보존

❑ 퇴직급여 관련 사항은 **퇴직금 관리대장에 모두 기재·관리**(중간정산, 퇴직연금 전환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문과 내역서를 비롯한 증거서류 첨부**)

❑ 퇴직금 관리대장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중요자료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학교(기관)에 관리**되어야 하며(전보 시 이송), **퇴직 이후 최소 5년간 보존**

IX 학교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퇴직급여 통합계좌를 통합하여 운영하지만 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 기타사업비 등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직종인 당직전담사, 청소원, 기숙사생활지도원(재원별 상이)은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적립시기에 도교육청 안내에 따라 통합 퇴직급여 계좌로 적립 **※ 그 외 직종은 도교육청에서 적립**

❑ 대체(기간제) 근로자, 교원대체직종,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은 통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과 같이 직종담당부서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받거나 학교에서 예산편성 · 운영

X 퇴직자 급여 신청

❑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법적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포함)**

❑ **퇴직급여 신청기한(법적 지급기한 준수를 위해 신청기한 엄수)**

학교(기관)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도교육청	⇨	연금사업자
		(행정지원과)		(노사협력과)		*학교(기관)		**도교육청
신청서류 공문 제출 (퇴직일5일 전까지)		접수 · 검토 (퇴직일 전까지)		최종확인		적립이후 기간 추가불입		퇴직급여 지급 (퇴직일 14일 이내)

*학교(기관)이 예산을 부담하는 직종은 퇴직급여 지급 시 추가불입 필요, 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퇴직연금(DB·DC)이 아닌 퇴직(적립)금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 **[학교(기관)] 정년퇴직 · 의원면직: 퇴직예정일 5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① 학교 · 기관 신청서류 →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으로 공문 제출

예1) 2026. 1. 1.자 정년퇴직 시: 2025. 12. 24.까지 공문으로 신청

예2) 2026. 1. 20.자 의원면직 시: 2026. 1. 13.까지 공문으로 신청

- **[교육지원청] 정년퇴직 · 의원면직**: 퇴직일 전까지

② 교육지원청 신청서류 검토 후 → 도교육청(노사협력과)로 공문 제출

예1) 2026. 1. 1.자 정년퇴직 시: 2025. 12. 31.까지 공문으로 제출

예2) 2026. 5. 15.자 의원면직 시: 2026. 5. 14.까지 공문으로 제출

❑ 지급절차

유형	처리절차
DB · DC · 퇴직 (세외적립)금	① **(학교)** 신청서류 공문 제출(퇴직 5일 전까지) → ②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신청서류 접수 · 검토(퇴직일 전까지) → ③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공문접수 · 검토 → ④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최근 적립 이후 근무기간 추가불입금 납입 → **※ 학교예산 부담직종은 퇴직급여 지급 시 해당 기관에 별도 추가불입 안내** ⑤ **(연금사업자 · 도교육청 재정과)** 퇴직연금 지급, 퇴직(세외적립)금 지급

※ **DB유형**: 학교(기관) 예산 부담 직종인 경우 추가불입금을 교육청 연금계좌에서 우선 지출하고, 학교는 지정일자에 사후 입금(지급처리 소요일수 단축을 위함.)

※ **DC유형**: 학교(기관) 예산 부담 직종인 경우 추가불입금을 학교에서 직접 입금 후 진행 운용상품을 매도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므로, 지급시점이 지연될 수 있음.

※ **제도전환(DB→DC)**인 근로자는 DC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제도전환(DC→DC+DB)**인 근로자는 각 DB, DC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처리(DB처리 후 DC처리)

❑ 퇴직급여 예산을 학교에서 편성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추가불입금 납입

▲ 대상직종: **당직전담사**(학교회계), **청소원**(학교회계),
기숙사생활지도원(기숙형중학교 6개교*)

* 기숙형중학교(6교): 소가야중, 거창덕유중, 미리벌중, 남해 꽃내중, 하동 한다사중, 산청중

※ 위 직종 외 별도 사업비로 지원하는 교육공무직원도 학교(기관)에 예산이 있으므로 학교(기관)가 부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학교(기관)에서 지속 예산편성 필요**

※ 추가불입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해당기관으로 불입 계좌와 일정 통보

추가불입금 **DB/퇴직(적립)금**: 퇴직급여 지급액 – 퇴직금 관리대장상 누적 적립액, **DC**: 직전 적립 이후 발생한 퇴직급여 소요액

※ "추가불입금" 의 의미

– DB/퇴직(세외적립)금은 퇴직금 관리대장상 총 누적적립금과 실제 지급되는 퇴직금 차액(부족분)을 의미 (실제 퇴직급여 지급액 – 퇴직금 관리대장상 누적 적립액 = 추가불입금)

– DC는 직전 적립 이후 발생한 퇴직급여 소요액을 의미함. (예: 2025. 2월말 적립 이후 2026. 1. 1.자 퇴직인 경우 2025. 3. 1. ~ 12. 31.(10개월분)의 추가불입금)

❑ 수령방법

○ **수령 방법**: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계좌로 수령을 원칙으로 함.**

※ 예외사유(「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될 경우 일반계좌로 수령 가능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

- IRP · 일시금 지급 방법 비교

구분	퇴직소득세 발생여부	비 고
IRP [지급원칙]	× 퇴직소득세 미발생 과세이연(수령 시 발생)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선택 수령 가능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지속 적립 · 운용가능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절세)
일시금	퇴직소득세 발생	퇴직소득세 즉시 납부

○ 퇴직소득세 신고 · 납부

유형	퇴직소득세 신고 · 납부
DC	▲ 처리할 사항 없음(연금사업자가 처리)
DB 및 세외적립	※ 퇴직소득세 처리기관: 도교육청 - 도교육청(노사협력과) → 도교육청(재정과)로 내역 통보 ▲ IRP 계좌로 수령 시 → 퇴직소득세 0원으로 신고(과세이연) ▲ 일반 계좌로 수령 시 → 퇴직소득세 납부

❑ 퇴직연금 유형별 신청 서류

유형	서 류
DB	① 공문 ② IRP계좌개설확인서 ③ 퇴직급여 총괄표 ④ 산출내역서(DB) ⑤ 퇴직급여 지급신청서(DB) ⑥ 원천징수영수증 ⑦ 퇴직 증빙(의원면직 시 사직서 등)
DC	① 공문 ② IRP계좌개설확인서 ③ 퇴직급여 총괄표 ④ 산출내역서(DC) ⑤ 퇴직급여 지급신청서(DC) ⑥ 퇴직 증빙(의원면직 시 사직서 등)
퇴직(적립)금 세외적립	① 공문 ② IRP계좌개설확인서 ③ 퇴직급여 총괄표 ④ 산출내역서(DB와 동일) ⑤ 원천징수영수증 ⑥ 퇴직 증빙(의원면직 시 사직서 등)
제도전환 (DB→DC)	DC 신청서류와 동일
제도전환 (DC→DC+DB)	① 공문 ② IRP계좌개설확인서 ③ 퇴직급여 총괄표 ④ 산출내역서(DB만 제출) ⑤ 퇴직급여 지급신청서(DB · DC 각각), ⑥ 원천징수영수증(DB만 제출) ⑦ 퇴직 증빙(의원면직 시 사직서 등)
공통서류	금품청산 기일연장 동의서 ※ 근로자서명 받아 퇴직금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 [기타 필요시 제출서류] 기한 초과 사유서: 신청 기한 초과하여 공문 발송 시 첨부 계좌사본: 퇴직급여법에 따라 IRP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IRP계좌개설확인서를 대신하여 제출

○ 작성방법 및 서류설명

서류명	내 용
공 문	지급요청 공문(서식1~4 참조)
산출내역서	퇴직연금 유형별 산출내역서 사용
계좌사본	퇴직자 명의의 IRP 계좌 사본(또는 계좌개설 확인증) ※ IRP 계좌 지급을 원칙, 단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계좌 사본 제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서식 사용, 근로자 서명 필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작성하여 제출, IRP계좌 수령 시에도 작성필요
금품청산 기일 연장 동의서	근로자 서명 필수((서식5, 학교(기관)자체 보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작성예시 참조: K에듀파인-업무지원-일반게시판-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 위 경로의 게시판을 반드시 확인하여 최신자료의 작성예시와 서식을 적극 참조·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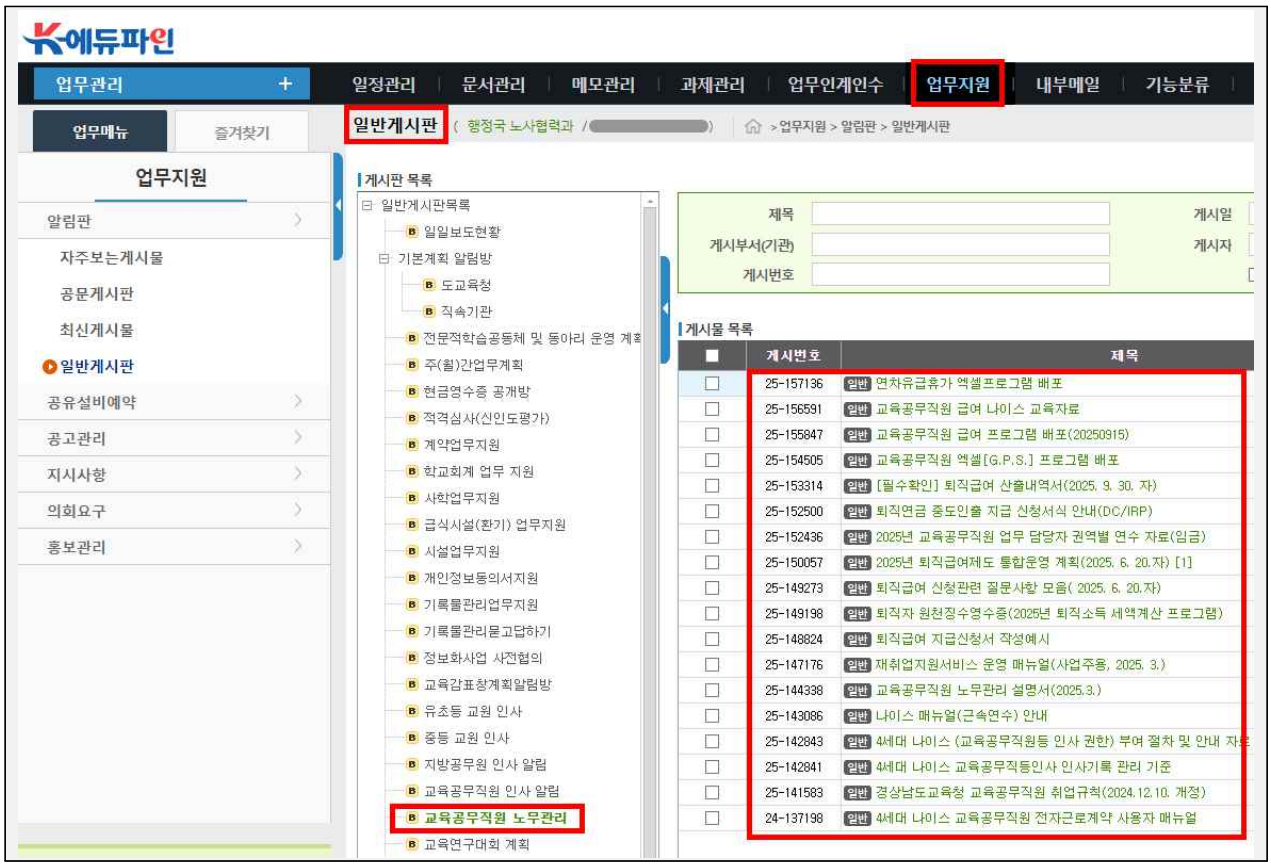

XI 행정사항

❑ [각급학교(기관)]

– 2026. 1. 1.로 정년퇴직(의원면직)하는 학교(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2025. 12. 24.(수)까지 해당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신청서류 발송

※ 퇴직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는 **본 계획서 6페이지 참조**

〈파일작성・제출 방법〉

- 퇴직급여 총괄표는 하나의 엑셀파일로 취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제출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제출, 첨부물을 스캔(PDF)하여 사본 제출(엑셀은 파일로 제출)
- 파일명은 "자료명+소속+이름" 으로 작성 예) DB지급신청서 경남초 김경남, 계좌사본 경남초 홍길동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 산출내역과 서류의 이상 유무를 검토하여 2025. 12. 31.(수)까지 도교육청 노사협력과로 자료 이송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이송서류**
- IRP계좌개설확인서, 퇴직급여총괄표, 원천징수영수증(엑셀파일),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그 외 서류는 교육지원청 자체보관

〈파일작성・제출 방법〉

- 첨부물의 용량이 커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첨부물만 업무담당자 메일로 별도 송부
- 퇴직급여 총괄표는 각급학교(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엑셀파일을 취합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 스캔파일(PDF)은 종류별로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 예) DB지급신청서 창원, 계좌사본 진주
- 원천징수영수증은 합치지 않고 총괄표의 순번을 붙여 개인별 1개 파일로 제출 (예: DB1 경남초 홍길동, DB2 경남중 김경남, DC1 대한초 박대한, 적립1 대한중 김대한)
- 산출내역서는 제출 검토 후 자체보관(제출 불필요)

XII 향후계획

❑ **퇴직급여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퇴직연금으로 통합추진**

- 2026년 상반기 중 각급 학교(기관)의 퇴직(세외적립)금으로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근로자 신청을 받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전환 추진

[서식1] 신청공문 예시(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학교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2026. 1. 1.자 퇴직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DB) 지급 요청

1. 관 련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나. 노사협력과-0000(2025. 0. 0.) “2026년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제도 운영계획”

2. 우리 학교(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급 요청합니다.

가. 인적사항

직 종	성 명	최초계약일	생년월일	퇴직일
사무행정원	홍길동	2012. 3. 1.	1970. 1. 1.	2026. 1. 1.

나. 퇴직급여 유형: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다. 퇴직사유: 정년퇴직/의원면직(택1)

라. 퇴직급여 신청내역

구 분		산정기간	지급금액(원)	비 고
퇴직급여 (근로자 지급액)		2012.3.1.~2025.12.31.	**31,000,000**	제외기간 2012.1.1.~2012.12.31.(1년)
세부 내역	누적적립금	퇴직금 관리대장상 누적 적립금	30,000,000	교육청 예산 부담 대상 / 학교(기관)예산 부담 대상 중 택1
	추가불입금	**퇴직급여** - 퇴직금 관리대장상 누적적립금 = 차액	1,000,000	
	계		**31,000,000**	**퇴직급여**(근로자 지급액)와 일치

붙임 1. IRP계좌개설확인서[용도:퇴직급여수령용](또는 일시금 수령 계좌사본) 사본 1부.

2. 퇴직급여 총괄표 1부.

3. 퇴직급여 산출 내역서(DB, 엑셀파일) 1부.

4.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DB) 사본 1부.

5.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엑셀파일) 1부.

6. 사직서 사본 1부.(의원면직 시만 해당) 끝.

[서식2] 신청공문 예시(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학교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2026. 1. 1.자 퇴직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DC) 지급 요청

1. 관 련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나. 노사협력과-0000(2025. 0. 0.) “2026년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제도 운영계획”

2. 우리 학교(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급 요청합니다.

가. 인적사항

직 종	성 명	최초계약일	생년월일	퇴직일
사무행정원	홍길동	2012. 3. 1.	1970. 1. 1.	2026. 1. 1.

나. 퇴직급여 유형: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다. 퇴직사유: 정년퇴직/의원면직(택1)

라. 퇴직급여 신청내역

구 분	산정기간	지급금액(원)	비 고
기적립금	2012.3.1.~2026.1.1.	30,000,000	제외기간 2012.1.1.~2012.12.31.(1년)
추가불입금	직전 적립이후 근무기간 2025.3.1.~12.31.(10개월)	1,000,000	교육청 예산 부담 대상 / 학교(기관)예산 부담 대상 중 택1
계		31,000,000	퇴직급여(근로자 지급액)

※ DC의 경우 적립금액과 관계없이 연금계좌의 실제 운용결과에 따른 최종금액으로 지급

※ 2026. 1. 1.자로 퇴직하는 기관근무자 추가불입금: 기관근무자는 노사협력과-9181(2025. 11. 26.) “[제출] 기관근무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 소요액 조사 및 납입 안내”에 따라 조사된 2025년분 퇴직급여를 12월 말에 적립함. 조사 이후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수당 등으로 인해 추가 지급분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여 작성(기관 근로자는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1년분의 퇴직급여를 적립하지만, 추가 지급분이 발생할 시 추가불입금이 발생하므로 유의)

붙임 1. IRP계좌개설확인서[용도:퇴직급여수령용](또는 일시금 수령 계좌사본) 사본 1부.

2. 퇴직급여 총괄표 1부.

3. 퇴직급여 산출 내역서(DC, 엑셀파일) 1부.

4.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DC) 사본 1부.

5. 사직서 사본 1부.(의원면직 시만 해당) 끝.

[서식3] 신청공문 예시(DC->DB 전환자(DC+DB 동시보유자))

○○학교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2026. 1. 1.자 퇴직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DC,DB) 지급 요청

1. 관 련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나. 노사협력과-0000(2025. 0. 0.) "2026년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제도 운영계획"

2. 우리 학교(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급 요청합니다.

가. 인적사항

직 종	성 명	최초계약일	생년월일	퇴직일
사무행정원	홍길동	2012. 3. 1.	1970. 1. 1.	2026. 1. 1.

나. 퇴직급여 유형: DC->DB 전환자(DC+DB 동시보유자)

다. 퇴직사유: 정년퇴직/의원면직(택1)

라. 퇴직급여 신청내역

구 분			산정기간	지급금액(원)	비 고
DC	기적립금		2012.3.1.~2013.2.28.	2,000,000	DC 가입 후 납입중단까지 기적립금
DB	퇴직급여 (근로자 지급액)		2014.3.1.~2025.12.31.	31,000,000	제외기간 2016.1.1.~2016.12.31.(1년)
	세부내역	누적적립금	퇴직금 관리대장상 누적 적립금	30,000,000	교육청 예산 부담 대상 / 학교(기관)예산 부담 대상 중 택1
		추가불입금	퇴직급여 - 퇴직금 관리대장상 누적적립금 = 차액	1,000,000	
		계		31,000,000	퇴직급여(근로자 지급액)와 일치
합 계				33,000,000	DC + DB

※ DC의 경우 적립금액과 관계없이 연금계좌의 실제 운용결과에 따른 최종금액으로 지급

붙임 1. IRP계좌개설확인서[용도:퇴직급여수령용](또는 일시금 수령 계좌사본) 사본 1부.

2. 퇴직급여 총괄표 1부.

3. 퇴직급여 산출 내역서(DB, 엑셀파일) 1부.

4.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DB) 사본 1부.

5.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엑셀파일, DB만 제출) 1부.

6. 사직서 사본 1부.(의원면직 시만 해당) 끝.

[서식4] 신청공문 예시(퇴직(세외적립)금)

○○학교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2026. 1. 1.자 퇴직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지급 요청

1. 관 련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나. 노사협력과-0000(2025. 0. 0.) “2026년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제도 운영계획”

2. 우리 학교(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급 요청합니다.

가. 인적사항

직 종	성 명	최초계약일	생년월일	퇴직일
사무행정원	홍길동	2012. 3. 1.	1970. 1. 1.	2026. 1. 1.

나. 퇴직급여 유형: 퇴직(적립)금

다. 퇴직사유: 정년퇴직/의원면직(택1)

라. 퇴직급여 신청내역

구 분		산정기간	지급금액(원)	비 고
퇴직급여 (근로자 지급액)		2012.3.1.~2025.12.31.	31,000,000	제외기간 2013.1.1.~2013.12.31.(1년)
세부 내역	누적적립금	퇴직금 관리대장상 누적 적립금	30,000,000	교육청 예산 부담 대상 / 학교(기관)예산 부담 대상 중 택1
	추가불입금	**퇴직급여** - 퇴직금 관리대장상 누적적립금 = 차액	1,000,000	
	합 계		31,000,000	**퇴직급여**(근로자 지급액)와 일치

붙임 1. IRP계좌개설확인서[용도:퇴직급여수령용](또는 일시금 수령 계좌사본) 사본 1부.

2. 퇴직급여 총괄표 1부.

3. 퇴직급여 산출 내역서(DB와 동일, 엑셀파일) 1부.

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엑셀파일) 1부.

5. 사직서 사본 1부.(의원면직 시만 해당) 끝.

[서식5] 퇴직급여 지급신청 지연 사유서(5일 전 제출 미준수 시 제출)

사 유 서

학교(기관)명		퇴직자명	
퇴직일자		퇴직급여 청구 공문발송일자	0000. 00. 00.
지연 사유 등	*※ 퇴직급여 지급청구가 지연된 사유 작성*		

[서식6] 퇴직금 관리대장

퇴직금 관리대장

직명	사무행정원	성명	홍길동	최초채용일	2013. 3. 1.

기준일자	근무연수	전년도 적립금 (예금이자 포함) ①	퇴직금 지급액 ②	적립금 잔 액 ③=①-②	당해연도 적 립 금		적립금 누계액 ③+⑤	산출근거 (비고)	결 재		
					총퇴직금 예상액 ④	금 회 적립금 ⑤=④-③			담당자	행정실장	교장
2014. 2.28.	1				900,000	900,000	900,000	30,000원×30일×1년			
2015. 2.28.	2	900,000		900,000	2,100,000	1,200,000	2,100,000	35,000원×30일×2년			
2016. 2.28.	3	2,100,000		2,100,000	3,600,000	1,500,000	3,600,000	40,000원×30일×3년			
2017. 2.28.	4	3,600,000		3,600,000	5,400,000	1,800,000	5,400,000	45,000원×30일×4년			
2018. 2.28.	5	5,400,000		5,400,000	7,500,000	2,100,000	7,500,000	50,000원×30일×5년			
2019. 2.28.	6	7,500,000		7,500,000	9,900,000	2,400,000	9,900,000	55,000원×30일×6년			
2020. 2.28.	7	9,900,000		9,900,000	12,600,000	2,700,000	12,600,000	60,000원×30일×7년			
2021. 2.28.	8	12,600,000		12,600,000	15,600,000	3,000,000	15,600,000	65,000원×30일×8년			
2022. 2.28.	9	15,600,000		15,600,000	18,900,000	3,300,000	18,900,000	70,000원×30일×9년			
2023. 2.28.	10	18,900,000		18,900,000	22,500,000	3,600,000	22,500,000	75,000원×30일×10년			
2024. 2.28.	11	22,500,000		22,500,000	26,400,000	3,900,000	26,400,000	80,000원×30일×11년			
2025. 2.29.	12	26,400,000		26,400,000	30.600.000	4,200,000	30.600.000	85,000원×30일×12년			

※ 향후 적립 필요액 조사 시 제출한 금액을 적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연도 적립금으로 기재
※ 중도인출, 퇴직연금 전환사항 등 중요사항도 함께 기록・자료편철(퇴직급여 산출에 기준이 됨)
※ 2025년 통합 이후 발생된 이자는 없는 것으로 간주(통합으로 인한 발생이자 도교육청에서 관리)

[참고자료1]

퇴직급여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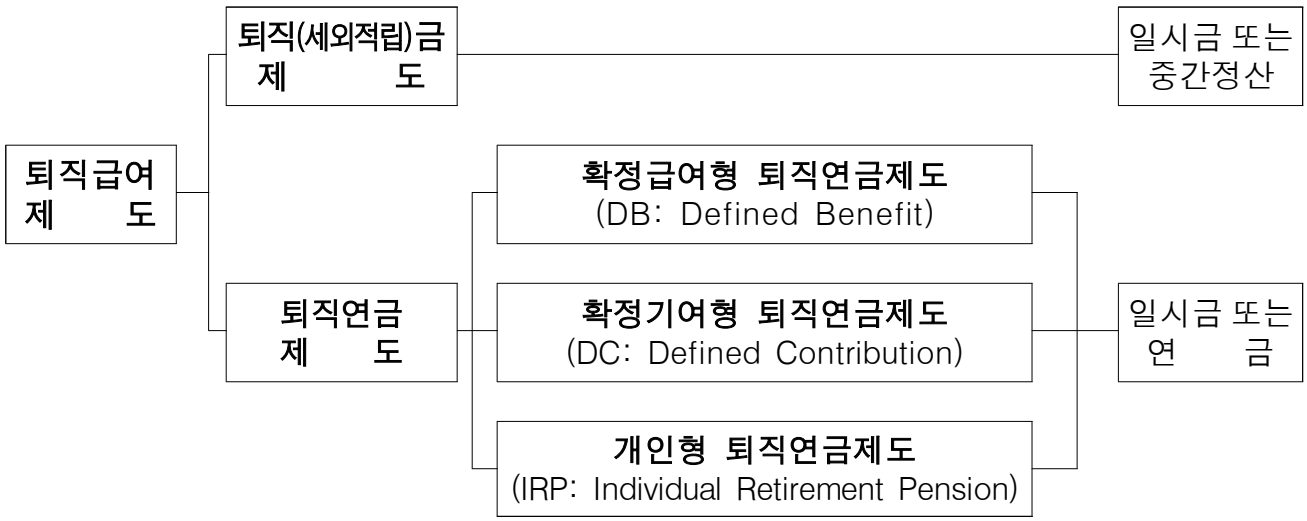

※ 퇴직급여제도 비교

구 분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세외적립금)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
운용주체	사용자	사용자 퇴직연금 사업자	근로자 퇴직연금 사업자	근로자 퇴직연금 사업자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규약작성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수수료 부담	해당없음	사용자	사용자 (추가 납입분 근로자)	사용자 (추가 납입분 근로자)
수익금 주체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중간정산	중간정산 (법정사유만 가능)	담보대출 (법정사유만 가능)	담보대출 또는 중간정산 (법정사유만 가능)	담보대출 또는 중간정산 (법정사유만 가능)
위험부담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특 징	사내 적립	사외 적립	사외 적립, 자기부담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	사외 적립, 자기부담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
급여수준	= 퇴직 시 평균(통상)임금×30일분 ×계속근로기간	퇴직(적립)금 제도와 동일 (급여수준 사전 결정)	= (연간 임금총액/12) + 운용손익 (운용에 따라 변동)	DC와 동일
연금수령 요 건	연 금	만 55세 이상으로서 연금계좌가입일로부터 연금수령기준일까지 5년이상 경과 (※ 개인형IRP에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5년 이상 경과 요건 제외)		
	일시금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참고자료2]

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 및 폐지

○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

- **도입사유**: 학교(기관)에서 운영해야 하는 직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 근로자가 있으나, 퇴직연금제도가 없는 학교 및 기관

학교(기관)	⇨	지방고용노동청	⇨	학교(기관)	⇨	학교(기관)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및 규약 제출 ⬇ 지방고용노동청		**규약심사 및 수리결과 통보 (약 15일 소요)** ⬇ 학교(기관)		**퇴직연금규약 수리서, 규약 및 은행 서류 제출** (해당 영업점 문의) ⬇ 연금사업자(은행)		**신규 개설된 퇴직연금계좌에 적립금 납입**

○ 퇴직연금제도 폐지 절차

[유의사항] 기간제 근로자, 교육공무직원 외 근로자 등 퇴직연금이 학교(기관)에서 직접 운영되고 있을 시 폐지하면 안됨.

- **폐지사유**: 퇴직 등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가 없어진 학교 및 기관

학교(기관)	⇨	지방고용노동청	⇨	학교(기관)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 제출 ⬇ 지방고용노동청		**폐지신고 접수 및 수리 통보 (약 15일 소요)** ⬇ 학교(기관)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 수리서 및 은행 서류 제출** ⬇ 연금사업자(은행)

○ 제출서류

구 분	지방고용노동청	연금사업자(은행)
도입 시	▪ 퇴직연금규약 및 신고서	▪ 퇴직연금규약 수리서 사본 ▪ 퇴직연금규약 사본 ▪ 은행 제출 서류(해당 지점에서 서식 수령)
폐지 시	▪ 퇴직연금제도 폐지 신고서	▪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 수리서 사본 ▪ 은행 제출 서류(해당 지점에서 서식 수령)

※ 확정급여형(DB형) 및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표준규약: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참조(클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26.>

[ ] 확정급여형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 ] 혼합형

※ 뒤쪽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내용	사업명(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종(주산품)
	상시 근로자 수 명		노동조합원 수 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Fax)번호
	퇴직급여제도 형태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른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뒤쪽 참조) [ ] 퇴직금제도 ※ 해당 사업(사업장)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에 모두 표시합니다.	
	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	년 월 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연금규약을 신고(신규 / 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장 대표)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의 경우] 1. 퇴직연금규약 2.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변경 통보의 경우] 1.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작성한 퇴직연금규약 2.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작성요령

1. “사업명(사업장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2. “대표자 성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명을 적습니다.

3. “업종(주산품)”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를 적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란에는 ‘(연 근무인원) ÷ (연 사업장 가동 일수)’를 적습니다.

5. “노동조합원 수”란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수를 적고,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주소”란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란에는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업무 담당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팩스(Fax)번호”란에는 사업장의 문서 수신이 가능한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9. “퇴직급여제도 형태”란은 신고(신규/변경) 후 해당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에 모두 표시합니다.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한 경우를 말합니다.(사용자가 두 제도를 각각 설정하고 가입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두 제도에 가입되는 기간을 서로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란에는 신고(신규/변경)하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나 동의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11.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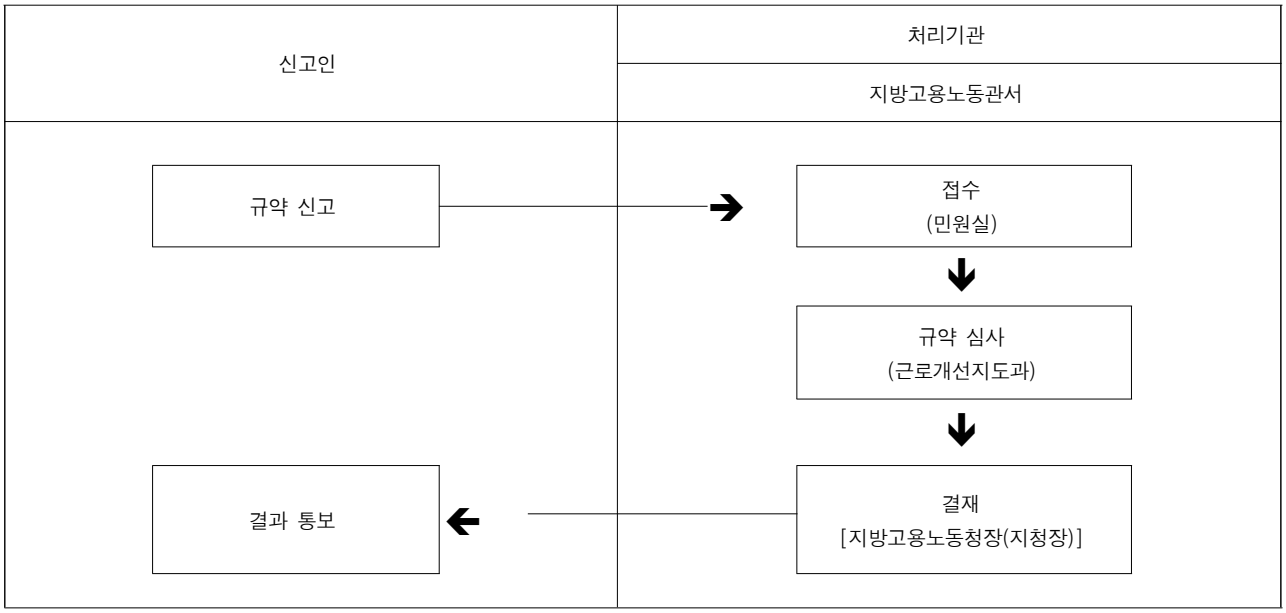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동의서

□ 학교(기관)명 :

□ 퇴직연금 종류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총 재직 근로자수 : 명

□ 사 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규약을 신고하는데 있어, 이 규약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순	성 명	동의(서명)	순	성 명	동의(서명)
1			13		
2			14		
3			15		
4			16		
5			17		
6			18		
7			19		
8			20		
9			21		
10			22		
11			23		
12			2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7. 12.>

[ ] 확정급여형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
[ ] 혼합형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내용	사업명(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종(주산품)
	상시 근로자 수 명		노동조합원 수 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Fax)번호
	퇴직급여제도 형태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른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뒤쪽 참조) [ ] 퇴직금제도 ※ 해당 사업(사업장)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에 모두 표시합니다.	
	폐지한 퇴직연금제도 형태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른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뒤쪽 참조) ※ 폐지한 퇴직연금제도에 모두 표시합니다.	
	제도 폐지 사유	[ ] 퇴직금제도로 환원 / [ ] 폐업 / 기타( )	
	제도 폐지일	**년 월 일**	
	동 의 일	**년 월 일**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사업장)의 적립금액	(원)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사업장)의 미납 부담금액	(원)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납입 예정일	
		해소방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연금제도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장 대표)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1. 폐지한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 2.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폐업사실증명원(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작성요령

1. “사업명(사업장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2. “대표자 성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명을 적습니다.
3. “업종(주산품)”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를 적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란에는 ‘(연 근무인원) ÷ [(연 사업(사업장) 가동 일수)]’를 적습니다.
5. “노동조합원 수”란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원 수를 적고, 없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6. “주소”란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란에는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업무 담당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팩스(Fax)번호”란에는 사업장의 문서 수신이 가능한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9. “퇴직급여제도 형태”란은 폐지 이전에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적용되던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표시합니다.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일정 비율로 함께 설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사용자가 두 제도를 각각 설정하고 가입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두 제도에 가입되는 기간을 서로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제도 폐지일”란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정한 날을 적으며, 이 신고서는 폐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동의일”란에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12.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사업장)의 적립금액”란에는 확정급여형(혼합형제도 내 확정급여형 포함)퇴직연금제도의 제도 폐지일 기준 (예상)적립금액을 적습니다.
13.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사업장)의 미납 부담금액”란에는 확정급여형(혼합형제도 내 확정급여형 포함)퇴직연금제도의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적립부족액을 적고, 확정기여형(혼합형제도 내 확정기여형 포함)퇴직연금제도의 제도 폐지일 기준 미납 부담금액을 적되, 부담금 납입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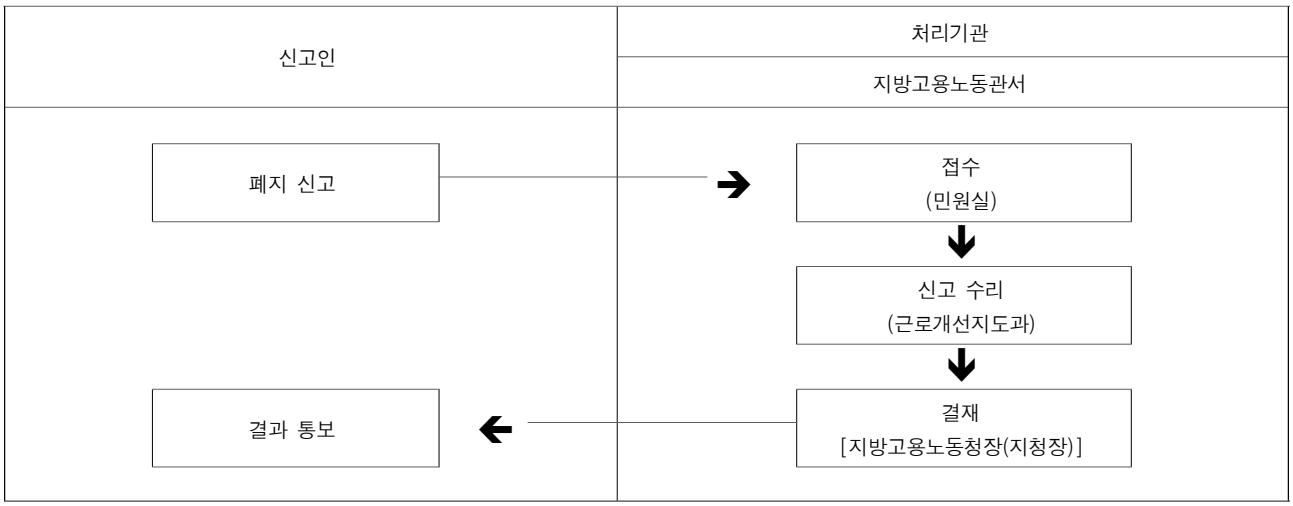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동의서

□ 학교(기관)명 :

□ 퇴직연금 종류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총 재직 근로자수 : 명

□ 사 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순	성 명	동의(서명)	순	성 명	동의(서명)
1			13		
2			14		
3			15		
4			16		
5			17		
6			18		
7			19		
8			20		
9			21		
10			22		
11			23		
12			24		